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8. 12. 11 (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18 - 121)

2. 개정이유

- 구정연구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정연구단 운영 인력 및 구청장 보좌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를 1,412명에서 1,420명으로 증원(안 제2조)
- 나. 마포구정연구단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3명 증원(안 별표 3, 부칙 제2조)
 - 일반직 5급(단장) 1명 증, 6급 이하 2명 증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다. 구청장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별정직 정원 5명 증원(안 별표 2, 3)
 -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
 - 별정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증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까지

5.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정연구단 운영 인력 및 구청장 보좌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1,412명에서 1,420명으로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마포구정연구단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3명 증원과 구청장 보좌인력 확보에 따른 별정직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 세부사항내용은
- 구정연구단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인력구성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6급상당) 2명, 다급(7급상당) 1명을 신규채용하고,
- 구청장 보좌 인력 확보에 필요한 별정직 5명의 직급은 별정6급 1명, 별정7급 1명, 별정8급 2명, 별정9급 1명으로 신규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특화 조직의 필요성과 지역단위 사업 증가에 따라 자치구 고유한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정책연구·개발 필요성 증대되고 있고, 다양한 민원의 발생과 점차 집단화, 거대화 되어감에 따라 이를 효과적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의 정무기능을 강화 하며,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만, 기존 부서와의 역할 중복과 비서실 인원 증가로 정책혼선 등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직진단 시 세밀히 분석하여 일선 행정에 부작용과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이 발생치 않도록 잘 살펴보아야 것으로 사료됨.